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| · 선 | 기관의장 |
|--------|------|
| 람 | |



제413호 2015. 7. 30.(목)

고 시

○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·고시 ----- 2

| 회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
| 람 | | | | | |

발행 : 사천시.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실. ☎ 831-2215 · FAX 831-6011

제413호(2)

고시

사천시 고시 제2015 - 105호

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

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· 고시 합니다.

2015. 07. 30.

사 천 시 장

□ 대진 일반산업단지계획

1. 산업단지의 명칭

O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

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

O 첨단 항공산업의 메카인 사천시에 신·재생에너지사업 기업 및 위그선(Wing -In-Ground Effect Ship) 상용화기업을 유치하여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풍력발전설비의 생산과 위그선 제조 및 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사천시의 위상을 국내 최고의 신소재산업·항공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방중소기업육성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제413호(3)

고 시

3.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2-2번지 일원

나. 면 적: 251,485 m²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

가. 개발기간 : 승인일로부터 ~ 2018. 12. 31

나. 개발방법 : 실수요자개발방식

5. 주요 유치업종

○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(C25)

- 전기장비 제조업(C28)
- O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
- O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
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가. 사업시행자 : 대진산업단지(주)외 3개사 대표 정 기 찬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길 25 (2층)

7.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

가. 지목별 현황

| 구 분 | 합 계 | 답 | 구거 | 도로 | 임야 | 대지 | 잡종지 | 창고용지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필지수 | 30 | 6 | 1 | 3 | 16 | 2 | 1 | 1 |
| 면 적(m²) | 251,485 | 11,611 | 181 | 16,218 | 219,814 | 1,412 | 1,832 | 417 |
| 구성비(%) | 100.0 | 4.6 | 0.1 | 6.4 | 87.4 | 0.6 | 0.7 | 0.2 |

제413호(4)

고 시

나. 소유자별 현황

| | | | 국우 | 구지 | | 공유지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구분 | 합계 | 소계 | 산림청 | 농 림 수산부 | 기 획 재정부 | 사천시 | 사유지 |
| 필지수 | 30 | 9 | 7 | 1 | 1 | 3 | 18 |
| 면적(m²) | 251,485 | 183,050 | 181,684 | 181 | 1,185 | 16,218 | 52,217 |
| 구성비(%) | 100.0 | 72.8 | 72.2 | 0.1 | 0.5 | 6.5 | 20.7 |

8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

가. 토지이용계획

| 구 분 | 면 적 (m²) | 구성비 (%)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251,485 | 100.0 | |
| 산업시설공간 | 149,610 | 59.5 | |
| BL1 | 27,625 | 11.0 | |
| BL2 | 30,345 | 12.1 | |
| BL3 | 55,940 | 22.2 | |
| BL4 | 35,700 | 14.2 | |
| 지원시설공간 | 12,760 | 5.1 | |
| 지원시설1 | 6,040 | 2.4 | |
| 지원시설2 | 6,720 | 2.7 | |
| 공공시설공간 | 89,115 | 35.4 | |
| 도로(중로1-5호선) | 28,645 | 11.4 | 도로:12.7% |
| 도로(중로2-18호선) | 3,250 | 1.3 | 도도·12.1% |
| 주차장⑩ | 1,960 | 0.8 | 주차장:2.0% |
| 주차장⑪ | 3,085 | 1.2 | 十个では・2.0% |
| 배수지⑤ | 1,120 | 0.4 | |
| 저류지③ | 2,805 | 1.1 | |
| 오수처리시설⑥ | 255 | 0.1 | 가압장 |
| 소공원⑩ | 9,415 | 3.7 | |
| 소공원20 | 780 | 0.3 | 노기·10 1 <i>m</i> |
| 완충녹지② | 9,395 | 3.8 | 녹지:19.1% |
| 완충녹지@ | 28,405 | 11.3 | |

사 천 시 궁 보

제413호(5)

고 시

- 나. 기반시설계획
- 1) 도로계획
 - ◎ 총괄표

| 류별 | | 합 계 | | | 1 류 | | | 2 류 | | | 3 류 |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
| 开包 | 노선수 | 연장 | 면적 | 노선수 | 연장 | 면적 | 노선수 | 연장 | 면적 | 노선수 | 연장 | 면적 |
| 합계 | 4 (2) | 6,521 (1,147) | 66,976 (23,000) | (1) | 948 (948) | 19,750 (19,750) | 3 (1) | 5,573 (199) | 46,226 (3,250) | - | - | - |
| 광로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대로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중로 | 2 (2) | 1,147 (1,147) | 23,000 (23,000) | 1 (1) | 948 (948) | 19,750 (19,750) | 1 (1) | 199 (199) | 3,250 (3,250) | - | - | - |
| 소로 | 2 | 5,374 | 42,976 | - | - | - | 2 | 5,374 | 42,976 | - | - | - |

- 주) () 내 사항은 산업단지 내 노선수, 연장, 면적임
 - ◎ 도로결정조서

| | | 규 | 모 | | | | 2-2 | | 사용형 | 주 요 | 최 초 | |
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(m) | 기능 | 연장 (m) | 기점 | 종점 | 태 | 경과지 | 결정일 | 비고 |
| 기정 | 소로 | 2 | 34 | 8 | 국지 도로 | 6,300 | 중로3-1 | 중로3-3 | 일반 도로 | - | 사천시고시 제2011-89호 (2011.7.28.) | |
| 변경 | 소로 | 2 | 34 | 8 | 국지 도로 | 1,670 | 중로3-1 | 중로1-가 | 일반 도로 | - | - | 노선축소 (구역 외) |
| 신설 | 소로 | 2 | 90 | 8 | 국지 도로 | 3,704 | 중로1-가 | 중로3-3 | 일반 도로 | - | - | 소로2-34 노선분리 (구역 외) |
| 신설 | 중로 | 1 | 5 | 20 | 국지 도로 | 948 | 소로2-34 | 소로2-가 | 일반 도로 | - | - | |
| 신설 | 중로 | 2 | 18 | 15 | 국지 도로 | 199 | 중로1-가 | 대진리 산70-4 | 일반 도로 | - | - | |

제413호(6)

고 시

2) 주차장계획

| 구분 | 도면표시 | 시설명 | 위치 | | 면적(m²) | | 최 초 | 비고 |
|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|
| 1 1 | 번 호 | 기원경 | カハ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미끄 |
| 신설 | 10 | 주차장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| - | 증) 1,960 | 1,960 | - | |
| 신설 | 11 | 주차장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4 일원 | - | 증) 3,085 | 3,085 | - | |

3) 공원계획

| - д н | 도면표시 | 고이버 | 시설의 | o) =1 | | 면 적(m²) |) | 최 초 | חן –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
| 구분 | 번호 | 공원명 | 종 류 | 위 치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비고 |
| 신설 | 19 | 대진 공원1 | 소공원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| - | 증) 9,415 | 9,415 | - | |
| 신설 | 20 | 대진 공원2 | 소공원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8 일원 | - | 증)780 | 780 | - | |

4) 녹지계획

| - д н | 도면표시 | 기거대 | 시설의 | ol =1 | | 면 적(m [†] |) | 최 초 | ען דו |
|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|
| 구분 | 번 호 | 시설명 | 종 류 | 위 치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비고 |
| 신설 | 23 | 녹지 | 완충녹지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2 일원 | - | 증) 9,395 | 9,395 | - | |
| 신설 | 24 | 녹지 | 완충녹지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8 일원 | - | 증) 28,405 | 28,405 | - | |

제413호(7)

고시

5) 상수도계획

| 구분 | 도면표시 | 시설명 | 위치 | | 면적(m²) | | 최 초 | 비고 |
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|
| 十七 | 번 호 | 시설명 | 귀시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비끄 |
| 신설 | 5 | 수도공급 설 비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-5 일원 | - | 증) 1,120 | 1,120 | - | |

◎ 용수량

| 구 분 | 용수수요량(m³/일)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|----|
| 계 | 114.1 | |
| 생활용수 | 114.1 | |
| 공업용수 | - | |

6) 하수도계획

| 구분 | 도면표시 | ग्रो स्रो त्त्री | 시설의 | o) - j] | | 면적(m² |) | 최 초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干证 | · 번 호 ^{기 글 o} 종 류 기기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미끄 | | | |
| 신설 | 6 | 수질오염 방지시설 | 오수처리 시 설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-2 일원 | - | 증) 255 | 255 | - | 펌프장 |

◎ 오·폐수량

| 구 분 | 오·폐수량(m³/일)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|----|
| 계 | 67.46 | |
| 생활오수 | 67.46 | |
| 산업폐수 | - | |

^ 1 전 시 공 보

제413호(8)

고 시

7) 유수지계획

| 구분 | 도면표시 | 지서며 | 시설의 | O] -] | | 면적(m²) | | 최초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|----|----|
| 1 1 1 | ·분 보 보 시설명 종 류 위치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미끄 | | | |
| 신 설 | 3 | 유수지 | 저류시설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5 일원 | - | 증) 2,805 | 2,805 | - | |

8) 에너지공급계획

◎ 전 력

| 전력소요예상량(MWh/m²·년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37,604 |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된 결과반영 |

9. 재원조달계획

가. 사업비 추정

| 구분 | | 금액(백만원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き / | 총사업비 | | |
| | 소계 | 7,384 | |
| 용 지 비 | 토지매입비 | 6,934 | 실거래가 적용: 평당 9만원 |
| | 지장물보상비 | 450 | 추정금액(축사, 주택2채, 묘지10기 등) |
| | 소계 | 25,400 | |
| 조 성 비 | 공사비 | 16,730 | 부지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|
| | 제경비 | 8,670 | |
| ਹੀ ਖੋ ਮੀ Q | 소계 | 3,600 | |
| 자본비용 금융이자 3,600 | 24개월 | | |
| 7]1 | 타비용 | 3,700 | 각종부담금, 운영 등 |

제413호(9)

고 시

나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| 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합 계 | 40,084 | 8,330 | 12,554 | 9,600 | 9,600 |
| 용지비 | 7,384 | 4,430 | 2,954 | - | - |
| 조성비 | 25,400 | 2,900 | 8,700 | 8,700 | 8,700 |
| 각종부담금 | 3,600 | 1,000 | 900 | 900 | 900 |
| 간접비 | 3,700 | 1,110 | 1,110 | 1,480 | |

10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:"붙임1"

제413호(10)

고 시

11. 유치업종 배치계획

| 구 분 | 업 종 | 면 적(m²) | 구성비(%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계 | - | 149,610 | 100.0 |
| | C25. 금속가공제품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 | 30,345 | 20.3 |
| 제조업 | C28.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| 55,940 | 37.4 |
| | C2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27,625 | 18.5 |
| | C31. 기타운송장비제조업 | 35,700 | 23.8 |

12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:해당없음

13.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

가. 토 지

| 구 분 | 면 적 (m²) | 구성비 (%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총계 | 251,485 | 100.0 | _ |
| 산업시설공간 | 149,610 | 59.5 | 사업시행자에 귀속 |
| 지원시설공간 | 12,760 | 5.1 | 사업시행자에 귀속 |
| 공공시설공간 | 5,045 | 2.0 | |
| 주차장 | 5,045 | 2.0 | 사업시행자에 귀속 |
| 공공시설공간 | 84,070 | 33.4 | |
| 도로 | 31,895 | 12.7 | 사천시에 귀속 |
| 배수지 | 1,120 | 0.4 | 사천시에 귀속 |
| 저류지 | 2,805 | 1.1 | 사천시에 귀속 |
| 오수처리시설 | 255 | 0.1 | 사천시에 귀속 |
| 공원 | 10,195 | 4.0 | 사천시에 귀속 |
| 완충녹지 | 37,800 | 15.1 | 사천시에 귀속 |

제413호(11)

고 시

나. 시설물

| 구 | 분 | 규 격 | 수 량 | 단위 | 관리처분계획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|
| 도 로 | 중 로 1 - 5 | B=20.0m | 948 | m | 사천시에 귀속 | |
| 上 上 | 중 로 2 - 1 8 | B=15.0 | 199 | m | " | |
| | L 형 측 구 | B=500 | 2,833 | m | 사천시에 귀속 | |
| | 우 수 관 | D300-D1200 | 2,391.5 | m | " | |
| | 우 수 받 이 | 400x500x750 | 150 | 개소 | " | |
| | 집 수 정 | 700x700x1000 | 9 | 개소 | " | |
| 우 수 | U 형 수 로 | 400C | 121 | m | " | |
| | 우 수 맨 홀 | 1ই, | 6 | 개소 | " | |
| | 一 一 世 宣 | 2 호 | 17 | 개소 | " | |
| | 저 류 지 | | 1.0 | 개소 | " | |
| | 비점오염저감시설 | | 2.0 | 개소 | " | |
| | 오 수 관 | D250-D300 | 675 | m | 사천시에 귀속 | |
| 오 수 | 오수관(압송관) | D150 | 696 | m | | |
| <u> </u> | 오수받이 | 410*510*940 | 5 | 개소 | " | |
| | 오수맨홀 | 1ই | 17 | 개소 | " | |
| | 상수도관 | D30 - D75 | 2,007 | m | 사천시에 귀속 | |
| 상 수 | 제수변 | D80 | 8 | 7] | " | |
| | 지상식소화전 | D100 | 1 | 개소 | " | |
| | 배수지 | | 1 | 식 | " | |
| | 전 석 쌓 기 | H=0.6~4.0m | 798 | M | 사천시에 귀속 | |
| 구 조 물 | 조립식PC암거 | 1.5x1.5 | 66 | m | " | |
| | 조립식PC암거 | 2.0x1.5 | 72 | m | " | |

제413호(12)

고 시

| 구 | 분 | 규 격 | 수 량 | 단위 | 관리처분계획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|
| | 아스콘포장 | T=50cm | 18,024 | m² | 사천시에 귀속 | |
|) | 보도블럭 | T=6cm | 4,215 | m² | " | |
| 포 장 | 잔디블록 | 996x996x150 | 3,602 | m² | " | |
| | 도로경계석 | 150x150x1000 | 3,648.5 | m | " | |
| 가 로 수 | 이팝나무 | H3.5xR12 | 241 | 주 | 사천시에 귀속 | |
| 공 원 | 소공원 | - | 2 | 개소 | 사천시에 귀속 | |
| | 방범 CCTV | | 2 | 개소 | 사천시에 귀속 | |
| | 교통표지판 | 주의, 규제 | 27 | EA | " | |
| 교통안전시설 | 과속방지시설 | 미끄럼방지공 | 507 | m² | " | |
| 교중안전시설 | 차선도색 | 실선,파선 | 812 | m² | " | |
| | 도로표지병 | | 433 | EA | " | |
| | 도로반사경 | D1000 | 5 | EA | " | |
| | 가로등 | H=8m | 54.0 | 본 | 사천시에 귀속 | |
| 전 기 | 교통신호기 | 점멸등 | 1.0 | 개소 | " | |
| | 횡단보도유도등 | 횡단보도 | 5.0 | 개소 | " | |

제413호(13)

고 시

- 14.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
 - 가. 용도지역
 -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총괄

| | | 7. H | | | 면 | 적 (m | 2) | 구성비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구 분 | | 기 정 | 벋 | 년 경 | 변 경 후 | (%) | , |
| | | 합 계 | | 452,124,147.5 (53,688,835.0) | | | 452,124,147.5 (53,688,835.0) | 100.0 11.9 | 는 () 해면부 |
| | | 계 | | 91,010,196.5 (2,094,121.0) | 증) 2 | 251,485.0 | 91,261,681.5 (2,094,121.0) | 20.2 0.5 | ()는 해면부 |
| | | 소 7 제1종전용주 | 거지역 | 11,070,130.5 328,111.0 | | | 11,070,130.5 328,111.0 | 2.6 0.1 | |
| | 주거 지역 | 제2존저요주 | 거지연 | - 6,376,886.0 | | | - 6,376,886.0 | 1.4 | |
| 도 | 시 즉 | 제1종일반주 제2종일반주 제3종일반주 준주거지 | 거지역 거지역 | 4,383,021.0 179,451.5 | | | 4,383,021.0 179,451.5 | 1.0 | |
| 시 | <u></u> 상업 | 소 | 계 | 441,661 1,276,471.0 | | | 441,661 1,276,471.0 | 0.1 0.3 | |
| ' | 지역 | 일반상업: 근린상업: | 지역 지역 | 1,157,961.0 118,510.0 | | | 1,157,961.0 118,510.0 | 0.3 | |
| 지 | 공업 | 소 기 | | 9,484,551.0 (1,020,829.0) | 증) 2 | 251,485.0 | 9,736,036.0 (1,020,829.0) | 2.1 0.2 | ()는 해면부 |
| 역 | 지역 | 일반공업 | 일반공업지역 8,512,355.0 (1,020,829.0) 증) | 증) 2 | 251,485.0 | 8,763,840.0 (1,020,829.0) | 1.9 0.2 | ()는 해면부 | |
| | | 준공업지 소 기 | | 972,196.0 67,466,752 | | | 972,196.0 67,466,752 | 0.2 15.0 | |
| | 녹지 지역 | 보전녹지: 생산녹지: | 지역 | 4,005,770.0 7,070,748 | | | 4,005,770.0 7,070,748 | 0.9 1.6 | |
| | ' ' □ | 자연녹지 | 지역 | 56,390,234.0 1,073,292.0 | | | 56,390,234.0 1,073,292.0 | 12.5 0.2 | |
| | | <u>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</u> | - ' / | 361,113,951.0 (51,594,714.0) | 감) 2 | 251,485.0 | 360,862,466.0 (51,594,714.0) | 79.8 11.4 | ()는 해면부 |
| 비 | -J) -J) | 소 7 보전관리 | 지역 | 125,293,237.0 47,100,731.0 | 감) 감) | 68,362.0 54,641.0 | 125,224,875.0 47,046,090.0 | 27.7 10.4 | " - 1 |
| 도시 | 관리 지역 | 생산관리 계획관리 | 지역 지역 | 35,349,462.0 42,710,494.0 | 참) | 13,721.0 | 35,335,741.0 42,710,494.0 | 7.8 9.4 | |
| 지 역 | | 관리지역미 농 림 지 | 분류 역 | 132,550.0 170,593,738.0 | 감) 1 | 183,123.0 | 132,550.0 170,410,615.0 | 0.1 37.7 | |
| | 7 | <u>,</u> 사연환경보전/ | 지역 | 65,226,976.0 | ш, - | 200,120.0 | 65,226,976.0 | 14.4 | |
| | | (해면부 미지 | 정 | (51,594,714.0) | | | (51,594,714.0) | 11.4 | |

제413호(14)

고 시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| 구성비 | 비고 |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|
| 十 七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7/8 円 | 비ᅶ |
| 합 계 | 251,485 | - | 251,485 | 100.0 | |
| 보전관리지역 | 54,641 | 감) 54,641 | - | - | |
| 생산관리지역 | 13,721 | 감) 13,721 | - | - | |
| 농림지역 | 183,123 | 감) 183,123 | - | - | |
| 일반공업지역 | - | 증) 251,485 | 251,485 | 100.0 | |

☑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| 도면 | 표시 | 위 치 | 용 도 | 지 역 | 면적 | 용적률 | 건 건 (H) 건\ 1Ì O |
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번 | 호 | 7 1 | 기정 | 변경 | (m²) | (%) | 결정(변경) 사유 |
| | | 곤양면 대진리 | 보 전 | 일 반 | | 350% |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|
| - | | 산71-2번지 일원 | 관리지역 | 공업지역 | 54,641 | 이하 |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|
| | | | | | | | 변경 |
| | | 곤양면 대진리 | 생 산 | 일 반 | 13,721 | 350% |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|
| | - | 1-4번지 일원 | 관리지역 | 공업지역 | 13,721 | 이하 | 변경 |
| | | 곤양면 대진리 | | 일 반 | | 350% |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|
| | - | 산70-4번지 일원 | 농림지역 | 공업지역 | 183,123 |) 350 % 이하 |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|
| | | · 10~±인기 한편 | | 0 11/17 | | -101 | 변경 |

나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| 구브 | 도면 | 그성명 | o) =1 | | 면 적(m ² | ") | 최 초 | 비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|
| 千元 | 구분 표시 번호 | 구역명 | 위치 | 기정 | 변 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고 |
| 신설 | - |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-2번지 일원 | - | 증)251,485 | 251,485 | - | |

제413호(15)

고 시

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구역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설 | - |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|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위치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-2번지 일원 면적: 251,485㎡ | 대진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|

2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(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가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① 도로 총괄표

(단위 : 개, m, m²) 합 2 류 1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6,521 19,750 66,976 948 5,573 46,226 합계 (1) (2) (1,147)(23,000)(948)(19,750)(1) (199)(3,250)광로 대로 2 1,147 23,000 1 948 19,750 1 199 3,250 중로 (2) (1,147)(23,000) (1) (948)(19,750)(1) (199)(3,250)소로 2 5,374 42,976 5,374 42,976

주) () 내 사항은 산업단지 내 노선수, 연장, 면적임

제413호(16)

고시

② 도로 결정 조서

| | | 규 | 모 | 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등 급 | 류별 | 번 호 | 폭 원 (m) | 기능 | 연장 (m) | 기점 | 종점 | 사용 형태 | 주 요 경과지 | 최 초 결정일 | 비고 |
| 기정 | 소 로 | 2 | 34 | 8 | 국지 도로 | 6,300 | 중로3-1 | 중로3-3 | 일반 도로 | - | 사천시고시 제2011-89호 (2011.7.28.) | |
| 변경 | 소 로 | 2 | 34 | 8 | 국지 도로 | 1,670 | 중로3-1 | 중로1-가 | 일반 도로 | - | - | 노선축소 (구역 외) |
| 신설 | 소 로 | 2 | 90 | 8 | 국지 도로 | 3,704 | 중로1-가 | 중로3-3 | 일반 도로 | - | - | 소로2-34 노선분리 (구역 외) |
| 신설 | 중로 | 1 | 5 | 20 | 국지 도로 | 948 | 소로2-34 | 소로2-가 | 일반 도로 | - | - | |
| 신설 | 중 로 | 2 | 18 | 15 | 국지 도로 | 199 | 중로1-가 | 대진리 산70-4 | 일반 도로 | - | - | |

제413호(17)

고 시

☑ 도로 결정 사유서

| 변경전 도로명 | 변경후 도로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소로2-34 | 소로2-34 | • 노선축소 : L=6,300m→1,670m |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| | | | |
| 12-04 | 1112-04 | - 1,070m | 노선축소(구역 외) | | | | |
| - | 소로2-90 | • 노선신설 : L=3,704m, B=8m |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소로2-34호선의 노선이 분리되어 신설 (구역 외) | | | | |
| - | 중로1-5 | • 노선신설 : L=948m, B=20m |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신설 | | | | |
| - | 중로2-18 | • 노선신설 : L=199m, B=15m |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신설 | | | | |

나)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조

| 구분 | 도면표시 |))) 11 11 | o) =) | | 면적(m²) | | 최 초 | 비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|
| | 번 호 | 시설명 | 위치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고 |
| 신설 | 10 | 주차장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| - | 증) 1,960 | 1,960 | - | |
| 신설 | 11 | 주차장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4 일원 | - | 증) 3,085 | 3,085 | - | |

☑ 주차장 결정 사유서

| 도면표시번호 | 시설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 |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0 | 주차장 | 주차장 신설 위 치 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면 적 : 1,960㎡ |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단지 내 시설물 이용객 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| | |
| 11 | 주차장 | 주차장 신설 위 치 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 일원 면 적 : 3,085 m² |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단지 내 시설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| | |

사 천 시 궁 보

제413호(18)

고 시

다)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조서

| ¬ н | 도면표시 | 크이퍼 | 시설의 | 릴의 이 기 | | 면 적(| m²) | 최 초 | 비 |
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|
| 구분 번 호 | 공원명 | 종 류 | 위 치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고 | |
| 신설 | 19 | 대진 | 소공원 | 사천시 곤양면 | _ | 증) | 9,415 | _ | |
| 다 근 | 17 | 공원1 | 工 0 也 | 대진리 산74 일원 | _ | 9,415 | 7,113 | _ | |
| 지 사 | 20 | 대진 | 소공원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| | 증) | 780 | | |
| 신설 | 20 | 공원2 | 소등전 | 1-8 일원 | ı | 780 | 780 | - | |

☑ 공원 결정 사유서

| 도면표시번호 | 공원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 |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9 | 대진 공원1 | 소공원 신설 위치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면적: 9,415㎡ | 지역 생활권 거주자 및 종사자 들의 보건·휴양·정서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소공원 신설 | | |
| 20 | 대진 공원2 | 소공원 신설 위치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8 일원 면적: 780㎡ | 지역 생활권 거주자 및 종사자 들의 보건·휴양·정서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소공원 신설 | | |

라)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 조서

| 그 님 | 도면표시 | भी भी प्ती | 시설의 | 위 > | ,ì | 면 적(m | | 1²) | 최 초 | 비 |
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|---|
| 구분 | 번 호 | 시설명 | 종 류 | 위 최 | N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고 |
| 신설 | 23 | 녹지 | 완충녹지 | 사천시 곤약 대진리 1-2 | | - | 증) 9,395 | 9,395 | - | |
| 신설 | 24 | 녹지 | 완충녹지 | 사천시 곤영 대진리 산70-8 | | - | 증) 8,405 | 28,405 | - | |

제413호(19)

고 시

☑ 녹지 결정 사유서

| 도면표시 번 호 | 시설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3 | 녹지 | 완충녹지 신설 위 치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2 일원 면 적: 9,395㎡ |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산업환경 제공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|
| 24 | 녹지 | 완충녹지 신설 위 치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8 일원 면 적: 28,405㎡ |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산업환경 제공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|

마)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 조서

| 구분 | 도면표시 | 기보다 | دا جا | | 면적(m²) | | 최 초 | 11] - |
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| 번 호 | 시설명 | 위치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비고 |
| 신설 | 5 | 수도공급 설 비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-5 일원 | - | 증) 1,120 | 1,120 | - | _ |

☑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

| 도면표시 번호 | 시설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5 | 수도공급 | 수도공급설비(배수지) 신설 위치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|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|
| | 설 비 | 산75-5 일원 면적: 1,120㎡ | 따른 수도공급설비(배수지) 신설 |

사 천 시 궁 보

제413호(20)

고 시

바)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결정 조서

| 구분 | 도면표시 | 시설명 | 시설의 | 위치 | | 면적(m²) | | 조 | 时 |
|----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|
| 丁亚 | 번 호 | 기설명 | 종 류 | 귀시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고 |
| 신설 | 3 | 유수지 | 저류 시설 | 시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5 일원 | - | 증) 2,805 | 2,805 | - | |

☑ 유수지 결정 사유서

| 도면표시번호 | 시설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 | 유수지 | 유수지(저류시설) 신설 위치 :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5 일원 면적 : 2,805㎡ |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수지(저류시설) 신설 |

사)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 조서

| л н | 도면표시 |))) [| 시설의 | دا جا | | 면적(n | n²) | 최 초 | n) –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구분 | 번 호 | 시설명 | 종 류 | 위치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비고 |
| 신설 | 6 | 수질오염 방지시설 | <i>오</i> 수차리 시 설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-2 일원 | - | 증) 255 | 255 | 1 | 펌프장 |

☑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

| 수질오약 6 방지시설 | 111.121202 1121 |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(오수처리시설) 신설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사 천 시 궁 보

제413호(21)

고시

(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| | 가구 | -) -) (» | | 획 지 | | 1 | |
|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도면번호 | 번호 | 면 적(m²) | 번 호 | 위 치 | 면 적(m²) | 비고 | |
| 계 | | 251,485 | - | - | 251,485 | | |
| - | | | 1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-2번지 일원 | 149,610 | 산업시설용지 | |
| - | | | 2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번지 일원 | 1,960 | 주차장10 | |
| - | I | 195,430 | 3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번지 일원 | 9,415 | 소공원19 | |
| | | | | 4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8번지 일원 | 28,405 | 완충녹지24 |
| - | | | | 5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8번지 일원 | 6,040 | 지원시설용지1 |
| - | | | 1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4번지 일원 | 3,085 | 주차장11 | |
| - | | | 2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8번지 일원 | 255 | 오수처리시설6 | |
| - | | | | 3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8번지 일원 | 6,720 | 지원시설용지2 |
| - | П | 24,160 | 4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5번지 일원 | 2,805 | 저류지3 | |
| - | | | 5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-5번지 일원 | 1,120 | 배수지5 | |
| - | | | 6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2번지 일원 | 9,395 | 완충녹지23 | |
| - | | | 7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-8번지 일원 | 780 | 소공원20 | |
| - | - | 31,895 | - | - | 31,895 | 도로(2개 노선) | |

제413호(22)

고 시

(3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| 도면번호 | 위 치 | 구 분 | 계 획 내 용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|
| | | 용 도 | • 지정용도: 건축법 시행령[별표1] 제17호의 공장 중 금속가공제품제조업(25), 전기장비 제조업(28)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 • 불허용도: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| | | |
| | 사천시 곤양면 | 건폐율 | • 70% 이하 | | | |
| I -1 | 대진리 산71-2번지 | 용적률 | • 300% 이하 | | | |
| | 일원 | 높 이 | • 5층 이하 | | | |
| | | 배 치 | - | | | |
| | | 형 태 | - | | | |
| | | 색 채 | - | | | |
| | | 건축선 | 건축한계선 : 2m(남측부 5m 녹지대로부터) | | | |
| | | 용 도 | • 지정용도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[별표13] 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• 불허용도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| | | |
| | 사처시 고야며 | 건폐율 | • 70% 이하 | | | |
| I -2 | , – , – – | 용적률 | • 350% 이하 | | | |
| 1 -2 |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8번지 일원 | | | | 높 이 | • 5층 이하 |
| | 근 년 | 배 치 | - | | | |
| | | 형 태 | - | | | |
| | | 색 채 | - | | | |
| | | 건축선 | - | | | |
| | | 용 도 | • 지정용도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[별표13] 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•불허용도: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| | | |
| | 사천시 곤양면 | 건폐율 | • 70% 이하 | | | |
| I -3 | 대진리 1-8번지 | 용적률 | • 350% 이하 | | | |
| | 일원 | 높 이 | • 5층 이하 | | | |
| | | 배 치 | - | | | |
| | | 형 태 | - | | | |
| | | 색 채 | - | | | |
| | | 건축선 | - | | | |

[※]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녹지, 공원, 수도공급설비, 유수지, 수질오염방시설 등)은 「도시계획시설 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」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 하지 않음.

제413호(23)

고 시

- 3)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- 가) 소공원1
- (1) 부지총괄표

| 구분 | 시설명 | 위치 | |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丁亚 | 기결정 | 1/1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비끄 |
| ō | 라 계 | - | - | 증) 9,415.0 | 9,415.0 | |
| 신설 | 도로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- | 증) 317.8 | 317.8 | |
| 신설 | 휴양시 설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- | 증) 914.0 | 914.0 | |
| 신설 | 녹지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- | 증) 8,183.2 | 8,183.2 | |

(2) 시설총괄표

| 그ㅂ | र्श सि प्त | 며 전(m²) | 시설규 | 비고 | |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|
| 구분 시설명 | | 면적(m²) | 건축면적 | 연면적 | H1 17. | |
| ŏ | 합계 | 9,415.0 | - | - | | |
| 신설 | 도로 | 317.8 | - | - | | |
| 신설 | 휴양시설 | 914.0 | - | - | | |
| 신설 | 녹지 | 8,183.2 | - | - | | |

제413호(24)

고 시

(3) 일반시설별조서

| | 도면 | | | | 시 | 설규모(m | n²) | |
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|
| 구분 | 표시 번호 | 시설명 | 면적(m²) | 위치 | 건축 면적 | 연면적 | 층수 | 비고 |
| | 합? | 계 | 9,415 | - | - | - | - | |
| | 소 | : 계 | 317.8 | - | - | - | - | |
| | 1-1 | 보행로1 | 87.6 | 곤양면 대진리 산70-3 | - | - | - | |
| 도로 | 1-2 | 보행로2 | 80.5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- | - | - | |
| 고도 | 1-3 | 보행로3 | 23.4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- | - | - | |
| | 1-4 | 보행로4 | 41.0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- | - | - | |
| | 1-5 | 보행로5 | 85.3 | 곤양면 대진리 산70-3 | - | - | - | |
| | 소 | · 계 | 914.0 | - | - | - | - | |
| 휴양 | 2-1 | 휴게시설1 | 600 | 곤양면 대진리 산70-3 | - | - | - | |
| 시설 | 2-2 | 휴게시설2 | 100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- | - | - | |
| | 2-3 | 휴게시설3 | 214 | 곤양면 대진리 산70-3 | - | - | - | |
| 녹지 | 3 | 녹지 | 8,183.2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- | - | - | |

나) 소공원2

(1) 부지총괄표

| 구분 | 시설명 | 위치 | | | 비고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|
| 十七 | 기결정 | T/1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미끄 |
| | 합계 | - | - | 증) 780.0 | 780.0 | |
| 신설 | 모모 | 곤양면 대진리 산71-2 | - | 증) 52.5 | 52.5 | |
| 신설 | 휴양시설 | 곤양면 대진리 산1-8 | - | 증) 58.5 | 58.5 | |
| 신설 | 녹지 | 곤양면 대진리 산71-2 | - | 증) 669.0 | 669.0 | |

제413호(25)

고 시

(2) 시설총괄표

| 구분 시설명 | 면 전(~;) | 시설규 | 비고 |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|
| | 면적(m²) | 건축면적 | 연면적 | 1112 | |
| ζ | 합계 | 780.0 | - | - | |
| 신설 | 도로 | 52.5 | - | - | |
| 신설 | 휴양시설 | 58.5 | - | - | |
| 신설 | 녹지 | 669.0 | - | - | |

(3) 일반시설별조서

| 구분 | 도면 | 시설명 | 면적(m²) | 위치 | 시설규모(m²)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|----|
| | 표시 번호 | | | | 건축 면적 | 연면적 | 층수 | 비고 |
| 합계 | | | 780.0 | - | - | - | - | |
| 도로 | 소 | 계 | 52.5 | - | - | - | - | |
| | 1-1 | 보행로1 | 52.5 | 곤양면 대진리 산71-2 | - | - | - | |
| 휴양 시설 | 소 | 계 | 58.5 | - | - | - | - | |
| | 2-1 | 휴게시설1 | 58.5 | 곤양면 대진리 1-8 | - | - | - | |
| 녹지 | 3 | 녹지 | 669.0 | 곤양면 대진리 산71-2 | - | - | - | |

제413호(26)

고 시

지구단위계획 시 행 지 침

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제1 장 총 칙

제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

제3 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

제4 장 건축물의 용도

제5 장 건축물의 용적률·건폐율·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

제6 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

제7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

제8 장 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

제9 장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

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제1 장 총 칙

제2 장 시설별 시행지침

제3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

고시

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이하"지침"이라 한다)은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,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 자관리하기 위해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내의 용도지역·지구,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, 대지의 규모, 용도,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,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침의 적용범위)

본 지침은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 제51조에 따라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전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 (지침적용의 기본원칙)

- 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등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,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,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사천시 관련조례에 따른다.
-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.
-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.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,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13호(28)

고시

- ④ 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시도는 본 지구단위계획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효력을 지닌다.
- ⑤ 지침이 대지 상호간 분할·합병 또는 공동개발의 해제·조정에 의해 모순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지침의 내용을 적용한다.
- ⑥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관련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.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법령에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적용한다.

- ① 『지구단위계획구역』이라 함은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'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'를 말하며, 본 지침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'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'을 말한다.
- ② 『기구 및 획지』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계획목적상 분할된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.
- ③ 『허용용도』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당해 획지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지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,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.
- ④ 『권장용도』라 함은 대상지역의 기능,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가능한 한 권장된 용도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⑤ 『불허용도』라 함은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, "사천시 도시계획조례" 등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당해 획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.
- ⑥ 『최고높이』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.
- ⑦ 『건축선』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.
- ⑧ 『공개공지』라 함은 "건축법"에 의하여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지를 말한다.
- ⑨ 『건축물의 전면』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주된 출입구가 설치된 면을 말한다.
- ⑩ 『공공보행통로』라 함은 일단의 대지안에 일반인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통로를 말한다.
- ① 『간선도로』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거나 연접하여 통과하는 도로로서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를 말한다.
-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.

고시

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지구단위계획의 결정(변경))

- 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(변경)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.
- 1. 지역의 세분 및 도시계획시설,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, 건축물의 용도·밀도·높이에 대한 결정(변경)은 "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"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.
 - 2. 1호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.
-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며,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본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 6 조 (건축계획 심의/허가)

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건축허가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 표기
- 2.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
- 3.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, 단면도
- 4.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
- 5.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
- 6.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
- 7. 증축, 개축, 재축 및 이전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현황 및 배치도
- 8. 신축 및 리모델링이 대한 심의 도면 제출시 주변 건축물이 함께 포함된 현황사진에 계획입면을 합성한 그림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.
- 9.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관련된 요구자료

제413호(30)

고시

제 7 조 (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적용기준)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단의 대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"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사항을 반영하여야하며, 다음 각 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 - 1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
 - 2.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
 - 3.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
 - 4.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

제 8 조 (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)

- ①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중 향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.
- ② 규제사항이 서로 상이한 필지간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전면도로폭이 더 큰 필지, 면적이 큰 필지, 강화된 규제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

규제사항

제 9 조 (가구 및 획지의 분할과 합병)

- ① 모든 가구 및 획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가구 및 획지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가구 및 획지로 합병할 수 없다. 다만 획지분할/합병 계획서를 작성하여 "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"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분할/합병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이 가능하다.
 - 1.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지의 분할
 - 2. 기부채납 등 토지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

제413호(31)

고시

제 4 장 건축물의 용도

규제사항

제 10 조 (허용용도)

- ① 허용용도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"및 "사천시 도시계획 조례" 제31조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(건축물에 대한 용도· 건폐율· 용적률· 높이·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)으로 지정된 용도에 한해서 건축할 수있다.
- ② 허용용도로 제시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인정 여부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른다.
- ③ 도면표시

허용용도

제 11 조 (불허용도)

- ① 불허용도 규제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" 및 "사천시 도시계획조례" 제31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"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" [별표3]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.
- ② 불허용도로 제시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인정 여부는 허가권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- ③ 도면표시

불허용도

제 5 장 건축물의 용적률·건폐율·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

규제사항

제 12 조 (건폐율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(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)에 따른다.

제413호(32)

고시

②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위한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건폐율이 지구단 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③ 도면표시

건폐율

70

제 13 조 (용적률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(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)에 따른다.

②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위한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③ 도면표시

용적률

300

제 14 조 (건축물의 최고높이)

① 지구단위구역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(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)에 따른다.

② 도면표시

최고높이



제 6 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

권 장 사 항

제 15 조 (건물의 방향성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전면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,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

제413호(33)

고시

제 16 조 (건축선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선은 "건축법" 및 "사천시 건축조례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7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

권 장 사 항

제 17 조 (공개공지)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가구 및 획지의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"건축법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8 조 (대지안의 조경)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가구 및 획지의 조경에 대해서는 "건축법" 및 "사천시 건축조례"에 따른다.

제 19 조 (조경 및 식재에 관한 사항)

- 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는 해당 업체가 관리토록 한다
- ② 완충녹지, 녹지 및 공원에는 계절별 수종으로 식재토록 한다

제 8 장 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

권 장 사 항

제 19 조 (내부동선)

-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산업단지 내부도로(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.)는 생산공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되, 보행자와 차량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내부도로는 가급적 구조물 및 도색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13호(34)

고시

규제사항

제 20 조 (부설주차장)

-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결과 통보에 따라 설치하되, 변경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협의된 부설주차장의 용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해서는 아니된다.

제 9 장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

권 장 사 항

제 21 조 (건축물의 의장)

-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변의 식생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.
- ② 건축물의 외벽면의 70%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은 1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.
-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급적 모든 벽에 유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경관적으로 유리하고 친환경적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전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, 대수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 22 조 (외벽 및 담장의 처리)

- ①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 담장설치를 제한하며, 불가피하게 담장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담장을 권장하되, 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③ 간선도로변에 10m 이상의 접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을 금지하되, 벽면에 조경, 벽화, 수퍼그래픽 등 장식처리를 하여 허가권자가 속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413호(35)

고시

제 23 조 (건축물의 1층의 외부형태와 야간조명)

- ① 간선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.
- ②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.
- ③ 야간조명등의 사용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내용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.

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이하"지침"이라 한다)은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 제51조에 의해 결정된 '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'의 공공부문에 적용하며,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침적용의 범위)

- ① '공공부문'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포함한 도로시설물, 포장, 도시안내체계, 가로식재, 가로 장치물, 조명 등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.
- ②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본 지침을 준용한다.

제 3 조 (지침적용의 기본원칙)

- ①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 및 조례, 편람, 지침 등에 따른다.
-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. 단, 시행지침 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보다 개선된 공공부문계획 및 설계내용이 수립될 경우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본 지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.

제413호(36)

고시

제 2 장 시설별 시행지침

도로시설

제 5 조 (설계기준)

- ① 주행 차로폭 및 보도측 차로폭은 도로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가능하다.
- ② 승/하차 시설의 형태는 유개승강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승강장의 구조는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.

제 6 조 (보행입체교차시설)

- ① 보행입체교차시설은 경사로, 지하보도, 육교 등으로 구분한다.
- ②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및 도로여건상 필요한 경우, 보행자의 횡단에 위험이 높은 지점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보행입체교차시설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개공지 등의 일부를 활용하여 설치토록 하며 특히, 지하보도의 출입구는 침상형 공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주변으로는 수목, 지피식 물, 화초류를 식재하여 미관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보행입체교차시설의 폭은 보행량에 따라 결정하며 자전거와 장애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와 계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야 한다.
- ⑤ 지하보도의 출입구나 육교의 계단 전면부에는 보행동선의 지장을 주는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되. 단 육교의 계단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전화박스, 우체통,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시설의 입체시설화는 가급적 지양하여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한다.

제 7 조 (과속방지 시설)

- ①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면도로,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로구간에 설치하되, 과속방지시설로 인한 2차사고의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~50m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.

제413호(37)

고시

- ③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출입구, 급경사 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.
- ④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(D=20m내외) 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설치를 배제한다.

제 8 조 (자전거도로의 적용범위)

일반도로 중 자전거 이용도로 및 이에 부수되는 자전거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 하지 않은 사항은 "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" 등 관련법규 및 계획에 따른다.

제 9 조 (입체보행통로)

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체보행통로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고, 보행자 안전시설 및 안내판, 야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.

제 10 조 (보도포장재료)

- ① 시공과 개수가 용이하고 염가이며, 대량 구입이 가능한 재료
-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이 용이한 재료
-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차량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
- ④ 가로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 있는 재료
- ⑤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

제 11 조 (보도포장 설계 및 시공)

- ① 구간별,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.
- ② 보도포장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포장패턴을 개발하여 조성한다.
- ③ 보도 이외의 장소별 특징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특화된 포장을 조성한다.
- ④ 포장은 보행자의 시설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,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.

고시

안내 표지시설

제 12 조 (적용범위)

- ① 본 지침은 도로, 광장, 공개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"도로법", "도로교통법", "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(경찰청)", "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(국토해양부)" 등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른다.
- ② 차량 및 보행 결절부와 주요 시설물의 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장소, 위치, 성격별로 특성을 부여하고 거리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.

제 13 조 (설치방식 및 위치)

- ① 안내 표지판의 크기, 형태, 색채,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, 배치한다.
- ② 식별성과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심볼,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며, 유사 형태의 안내표지시설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로 신축성 있게 규격화 하여야 한다.
- ③ 연속적인 안내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 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.

제 14 조 (보행안전 안내시설)

- ①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부에 안내 표지판 또는 1m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위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차량의 접근을 최소화 한다.
- ② 안내기둥 시설은 주간에는 시각적으로 지역(장소)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색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낮과 밤에도 연속적인 차량 및 보행안내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.
- ③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 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띌수 있도록 설계 배치한다.

제413호(39)

고시

가 로 식 재

제 15 조 (수종선정)

- ①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.
-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,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.
- ③ 이식이 용이하고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.
- ④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은 가급적 배제한다.

제 16 조 (식재방법)

- ① 지구 내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등에 중점 식재하여 경관 향상을 유도한다.
-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 표지판,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한다.
-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하다.
- ④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 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한다.
- ⑤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1~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 공간을 조성한다.
- ⑥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 배치를 유도하며, 승/하차장 주변 위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.

도로시설물

제 17 조 (도로시설물)

- ① 방호울타리
- 1.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/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13호(40)

고 시

② 볼라드

- 1.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 경계부에 설치, 1~2m 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.
- 2. 야간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 겸한 볼라 드 설치를 권장한다.
- 3.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각부에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식을 권장한다.
- ③ 도로시설물의 유형별 종류와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.

도로시설물의 유형별 종류와 설치위치

| 구 분 | 도로변 | 버스정류장 | 보행결절점 | 쌈지공원 및 광장 |
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휴지통 | 0 | • | • | • |
| 벤치 | 0 | • | • | • |
| 공중전화 | 0 | 0 | 0 | 0 |
| 음수대 | | 0 | 0 | 0 |
| 파고라, 쉘터 | | 0 | | 0 |
| 가로 판매대 | | 0 | 0 | |
| 자전거 보관대 | | | | 0 |
| 시계탑 | | | 0 | 0 |
| 버스정차대 | | • | | |
| 문주 | | | | 0 |

※ 필수시설 : ● 권장시설 : ○

제413호(41)

고시

조 명

제 18 조 (설치기준)

- ① 가로의 조명시설은 도로의 성격, 기능, 위계에 따라 적합한 조도, 배열방식, 높이 등을 구분하여 적용한다.
- ② 조명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 및 "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기준(KAS3701)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.

제 19 조 (야간 조명 강화)

- ① 야간보행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야간보행밀도가 높은 가로변에는 보행등겸 벤치・볼라드 설치를 권장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한다.
-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권장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.

하부조명 강화

| 조 명 | 해당용도 | 높 이 | 간 격 | 광 원 | 조명방식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볼라드형 보행등 | 보행자전용/우선도로 | 0.8~1.5 m | 2~4m | 백열등, 나트륨등 | 측향/하향 간접/직접조명 |
| 접지형조 명등 | 주요 조형물 또는 식재 건축물의 외벽, 보도의 바닥 | 접지형 | 불규칙 | 백열등, 나트륨등 | 상향/측향/하향측 간접조명 |

제 3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

제 20 조 (설계도서 작성)

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본 지침을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 분석과 계획, 설계(현상설계 적극모색)등의 상세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.

제413호(42)

고 시

제 21 조 (지침의 조정)

- ① 본 지침 상에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 계획설계 등 상세설계(현상설계 포함)가 추진 되어 본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 조정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본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1. 당해 구역의 교통관련 사업이나,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
 - 2.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
- 3.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나 자문을 득한 경우
 - 4.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

부 칙

이 지침은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

사 천 시 궁 보

제413호(43)

고 시

15. 지정(개발계획) 구역계 좌표조서

| 번호 | 좌 | 丑 | HJ 중 | 좌 표 | | |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변호 | X | Y | 번호 | X | Υ | | |
| 1 | 172,632.5186 | 108,372.2617 | 41 | 172,109.2256 | 108,945.6646 | | |
| 2 | 172,646.0604 | 108,331.8837 | 42 | 172,138.0770 | 108,928.3560 | | |
| 3 | 172,648.4562 | 108,272.9179 | 43 | 172,145.5807 | 108,921.1567 | | |
| 4 | 172,671.3132 | 108,245.2612 | 44 | 172,149.1000 | 108,916.4650 | | |
| 5 | 172,673.6135 | 108,193.7704 | 45 | 172,156.0670 | 108,919.0680 | | |
| 6 | 172,645.3230 | 108,191.6250 | 46 | 172,159.6530 | 108,922.8200 | | |
| 7 | 172,638.6130 | 108,172.2570 | 47 | 172,166.7380 | 108,923.8400 | | |
| 8 | 172,638.5360 | 108,163.1140 | 48 | 172,178.4990 | 108,925.5320 | | |
| 9 | 172,634.2180 | 108,160.5330 | 49 | 172,179.1340 | 108,916.7750 | | |
| 10 | 172,621.1660 | 108,158.0514 | 50 | 172,185.6820 | 108,903.7590 | | |
| 11 | 172,611.7491 | 108,198.3124 | 51 | 172,188.4110 | 108,899.1790 | | |
| 12 | 172,585.5860 | 108,228.1690 | 52 | 172,193.8700 | 108,890.0180 | | |
| 13 | 172,567.3760 | 108,238.5460 | 53 | 172,194.8610 | 108,890.5030 | | |
| 14 | 172,559.7840 | 108,258.3240 | 54 | 172,200.3190 | 108,893.1710 | | |
| 15 | 172,476.9466 | 108,335.7784 | 55 | 172,202.9040 | 108,894.4350 | | |
| 16 | 172,415.5696 | 108,261.2575 | 56 | 172,209.0980 | 108,895.4960 | | |
| 17 | 172,376.4920 | 108,268.2250 | 57 | 172,221.9770 | 108,892.2970 | | |
| 18 | 172,336.0367 | 108,292.0751 | 58 | 172,242.9240 | 108,878.8390 | | |
| 19 | 172,319.8450 | 108,306.1880 | 59 | 172,244.6410 | 108,891.9040 | | |
| 20 | 172,312.5200 | 108,304.8530 | 60 | 172,245.7891 | 108,898.9132 | | |
| 21 | 172,308.3500 | 108,321.8990 | 61 | 172,283.8843 | 108,892.4913 | | |
| 22 | 172,303.1642 | 108,319.5818 | 62 | 172,303.8798 | 108,888.4594 | | |
| 23 | 172,297.7881 | 108,335.7245 | 63 | 172,323.8935 | 108,884.4711 | | |
| 24 | 172,256.1253 | 108,394.8232 | 64 | 172,342.0159 | 108,875.9693 | | |
| 25 | 172,241.6778 | 108,403.1907 | 65 | 172,359.8567 | 108,866.7956 | | |
| 26 | 172,223.3325 | 108,428.3279 | 66 | 172,375.1369 | 108,855.2457 | | |
| 27 | 172,207.4997 | 108,452.5307 | 67 | 172,394.2567 | 108,839.9594 | | |
| 28 | 172,114.6528 | 108,579.8193 | 68 | 172,411.1057 | 108,822.1773 | | |
| 29 | 172,072.9134 | 108,658.1631 | 69 | 172,426.2199 | 108,803.1012 | | |
| 30 | 172,055.5560 | 108,709.9365 | 70 | 172,440.5385 | 108,783.8404 | | |
| 31 | 172,046.3136 | 108,774.8763 | 71 | 172,454.6889 | 108,764.8701 | | |
| 32 | 172,014.4011 | 108,885.9947 | 72 | 172,460.0340 | 108,756.3626 | | |
| 33 | 171,986.7474 | 108,917.3733 | 73 | 172,441.5867 | 108,736.5942 | | |
| 34 | 171,956.0155 | 108,948.5468 | 74 | 172,536.5046 | 108,575.9980 | | |
| 35 | 171,951.2451 | 108,949.8668 | 75 | 172,542.1498 | 108,553.0943 | | |
| 36 | 171,953.0213 | 108,958.3960 | 76 | 172,569.3798 | 108,505.9222 | | |
| 37 | 171,973.6725 | 108,966.0889 | 77 | 172,562.9756 | 108,475.5413 | | |
| 38 | 172,005.1905 | 108,966.0376 | 78 | 172,566.8883 | 108,467.8459 | | |
| 39 | 172,041.9427 | 108,944.9049 | 79 | 172,591.5695 | 108,452.3998 | | |
| 40 | 172,060.9114 | 108,948.9910 | | | | | |

제413호(44)

고 시

16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O 관련도서는 사천시청(항공산업과)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(관련도서 게재생략)

<붙임1>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

O 토지조서

| *1 =1 | | | | 지 적 | 편 입 | | 소 유 자 | 소유자 | -이외의 | 권리자 | 비고 |
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일련 번호 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공 부 (m²) | 면 적 (m²) | 성 명 | 주 소 | 성명 | 주소 | 권리 내용 | (소유 지분) |
| | 30필 | 지 | | 401,248 | 251,485 | _ | | _ | _ | _ | |
| 1 | 대진리 | 1 | 임 | 598 | 598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2 | 대진리 | 1-1 | 답 | 1,663 | 1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3 | 대진리 | 1-2 | 답 | 1,322 | 742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4 | 대진리 | 1-3 | 구 | 221 | 181 | 국(농림수산부) | | _ | _ | _ | |
| 5 | 대진리 | 1-4 | 답 | 826 | 826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6 | 대진리 | 1-5 | 답 | 1,365 | 810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7 | 대진리 | 1-6 | 잡 | 3,157 | 1,832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8 | 대진리 | 1-7 | 답 | 714 | 650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9 | 대진리 | 1-8 | 답 | 8,582 | 8,582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10 | 대진리 | 4-1 | 대 | 1,224 | 1,224 | 유영천 |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85-4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 106-1501 | _ | _ | _ | |
| 11 | 대진리 | 4-2 | 창 | 714 | 417 | 유영천 |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85-4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 106-1501 | _ | _ | _ | |
| 12 | 대진리 | 4-3 | 대 | 188 | 188 | 백민웅 |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6번길 4(부평동2가) | _ | _ | _ | |
| 13 | 대진리 | 산70-1 | 임 | 137,461 | 53,825 | 국(산림청) | | _ | _ | _ | |
| 14 | 대진리 | 산70-2 | 임 | 593 | 593 | 국(산림청) | | _ | _ | _ | |
| 15 | 대진리 | 산70-3 | 도 | 9,393 | 9,313 | 사천시 | | _ | _ | _ | |
| 16 | 대진리 | 산70-4 | 임 | 50,002 | 50,002 | 국(산림청) | | _ | _ | _ | |
| 17 | 대진리 | 산70-5 | 임 | 1,147 | 1,147 | 국(산림청) | | _ | _ | _ | |
| 18 | 대진리 | 산70-6 | 도 | 2,498 | 1,965 | 사천시 | | _ | _ | _ | |
| 19 | 대진리 | 산70-8 | 임 | 91,622 | 48,132 | 국(산림청) | | _ | _ | _ | |

^1 천 시 궁 보

제413호(45)

고 시

| റി ച | | | | 지 적 | 편 입 | | 소 유 자 | 소유지 | -이외의 | 권리자 | 비고 |
|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일련 번호 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공 부 (m²) | 면 적 (m²) | 성 명 | 주 소 | 성명 | 주소 | 권리 내용 | (소유 지분) |
| 20 | 대진리 | 산71-2 | 임 | 10,397 | 10,397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21 | 대진리 | 산71-3 | 도 | 4,940 | 4,940 | 사천시 | | _ | _ | _ | |
| 22 | 대진리 | 산71-4 | 임 | 20,266 | 20,266 | 강춘성 | 성내리 155 | _ | _ | _ | |
| 23 | 대진리 | 산72-1 | 임 | 14,841 | 13,471 | 국(산림청) | | _ | _ | _ | |
| 24 | 대진리 | 산72-2 | 임 | 1,185 | 1,185 | 국(기획재정부) | | _ | _ | _ | |
| 25 | 대진리 | 산72-3 | 임 | 14,604 | 14,514 | 국(산림청) | | _ | _ | _ | |
| 26 | 대진리 | 산73-0 | 임 | 2,083 | 2,083 | 조주홍 | 환덕리 82 | - | - | _ | |
| 27 | 대진리 | 산74-0 | 임 | 1,041 | 1,041 | 남평문씨강성군 파상빈공소종중 | 서정리 370 | _ | _ | _ | |
| 28 | 대진리 | 산74-2 | 임 | 11,058 | 1,855 | 남평문씨강성군 파상빈공소종중 | 서정리 370 | _ | _ | _ | |
| | | | | | | 조상철 |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6-27 | _ | _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진흠 | 창원시 봉곡동 26-13 | - | - | _ | 1/7 |
| | | | | 조윤흠 |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북한산 시티아파트 144-404 | _ | _ | _ | 1/7 | | |
| 29 | 대진리 | 산75-5 | 임 | 600 | 600 | 조용석 | 부산 금정구 청룡동 350 청룡동경동아파트 106-607 | _ | _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재욱 | 서울 서초구 양재동 292-9 | _ | _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재천 |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-2 향촌아파트 206-503 | _ | _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삼태 | 부산 서구 남부민동 35-19 | | -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상철 |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6-27 | | -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진흠 | 창원시 봉곡동 26-13 | _ | _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윤흠 |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북한산 시티아파트 144-404 | _ | _ | - | 1/7 |
| 30 | 대진리 | 산75-10 | 임 | 6,943 | 105 | 조용석 | 부산 금정구 청룡동 350 청룡동경동아파트 106-607 | _ | _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재욱 | 서울 서초구 양재동 292-9 | _ | _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재천 |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-2 향촌아파트 206-503 | _ | _ | _ | 1/7 |
| | | | | | | 조삼태 | 부산 서구 남부민동 35-19 | _ | _ | - | 1/7 |

고시

□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

- 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-1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
 - 나. 사업의 명칭 :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,

녹지,공원,유수지,수도공급설비,수질오염방지시설)사업
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 - 가. 도 로 _C 중로1-5호선 : L=948m, B=20m

└ 중로2-18호선 : L=199m, B=15m

- 나. 주차장 : A=5,045 m²(주차장① A=1,960 m², 주차장② A=3,085 m²)
- 다. 녹 지 : A=37,800 m²(완충녹지①A=9,395m², 완충녹지②A=28,405m²)
- 라. 공 원 : A=10,195m²(소공원① A=9,415m², 소공원② A=780m²)
- 마. 유수지 : **A=2,805** m²
- 바. 수질오염방지시설 : A=255㎡
- 사. 수도공급설비 : A=1,120 m²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: 대진산업단지(주) 외 3개사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길 25(2층)
- 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- 가. 착수예정일 : 인가고시일로부터 3개월이내
 - 나. 준공예정일 : 착수일 ~ 2018. 12. 31 이내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1 참조
- 7. 관계도서 : 실음생략 (사천시 항공산업과)

제413호(47)

고 시

□ 군도6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5년 07월 일

사 천 시 장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
| 구분 | 종류 | 노선번호 | 노선명 | 위치 | 면적 | 기점 | 종점 | 주요 통과지 | 총연장 (㎞) |
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변경 | 군도 | 6호선 | 후 주 중 등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28,645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 | 곤양면 대진리 산70-6 | | 0.948 |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대진일반산업단지내 도로개설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16. 1. 1 ~ 2018. 12. 30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붙임1 참조
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○ 열람기간 :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

○ 공람장소 : 사천시 항공산업과

제413호(48)

고 시

□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,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07월 일

사 천 시 장

| 도로의 종류 | 일 반 도 로 | 노선번호 (노선명) | 군도6호선 (후전~중항간)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
| 공사의 종류 | "대진일반산업단지" 조성을 위한 「도로법」제36조 규정에 의거 5 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[신청인 : 대진산업단지(주) 대표 정기찬 외 3개사] | | | | | | | | |
| 공사시행 구 간 | 곤양면 대진리 산70-1번지 ~ 산70-6번지 까지 (0.948km) | | | | | | | | |
| 공사시행 기 간 | 2016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0일 까지 | | | | | | | | |
| 공사시행 이 유 | "대진일반산업단지" 조성으로 인해 기존 군도6호선(폭8m)의 도로가 이설 됨에 따라 폭원 20m로 연장 948m를 개설 | | | | | | | | |